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27호
2. 발 의 자 : 김혜영 의원
3. 발의일자 : 2023. 3. 29.
4. 회부일자 : 2023. 4. 3.

II.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외부전문가의 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교육청 소관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각 위원회별로 개정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5조)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김혜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627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8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고 이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91개 위원회(법령 56개, 조례 3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그 위원 구성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위원은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직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해당 위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안건내용 정리 및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민간 위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반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대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법적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4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로 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동 조례안 관련 위원회 성격 및 구성 현황¹⁾

위원회명	성격	설치근거	위원 정수	위촉직 위원수	위원장	부위원장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문	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	11	6	부교육감	기조실장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자문	조례	10	9	외부위원	외부위원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	자문	조례	10	7	외부위원	외부위원

1) 위원회는 크게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다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구분됨. 여기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반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구속되지 않음. 「법령입안 길잡이」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19p.

장학생심사위원회	의결	조례	6	5	교육정책국장	참여협력담당관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조례	7	5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서울특별시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조례	15	13	외부위원	참여협력담당관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자문	조례	13	10	교육정책국장	외부위원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의결	조례	10	6	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의결	조례	9	6	부교육감	
생명존중위원회	의결	조례	9	7	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생활 교육과장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의결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6)	8	6	외부위원	체육건강문화 예술과장
교육기부위원회	자문	조례	11	8	외부위원	외부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의결	조례	15	9	부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위원회	의결	조례	11	9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5353., 2023.4.7.).

○ 그러나 동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²⁾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이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도교육청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⑧(생략)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2]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타시도 구성 현황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대구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대전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원 중 호선	교육정책국장
울산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정책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행정국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부교육감	행정국장
충청남도	부교육감	기획국장
충청북도	부교육감	기획국장
경상남도	민간위원 중 호선	민간위원 중 호선
경상북도	부교육감	정책국장
전라남도	부교육감	행정국장
전라북도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장 지명
제주도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 못지 않게 중기지방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의 개정 여부는 동 폐지조례안과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정진국 2180-8265
----------	------------------	-------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